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31호

우편업무규정 제3조 및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서지역 창구 운영시간 조정관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도서지역 창구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고시

1. 대상국 및 업무 취급시간 조정내역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시행일	업무 취급시간 조정		
				현행(~에서)	조정(~으로)	비고
인천	덕적	6급	'16. 5. 23.	(우편) 09:00~18:00 (금융) 09:00~16:30	(우편) 08:00~17:00 (금융) 08:00~16:30	※ 금융 자동화기기(ATM, CD기) 08:00 ~ 17:00
	북도	별정국	'16. 5. 23.			
	연평	7급	'23. 8. 7.			
백령	백령	5급	'21. 10. 18.			
	대청	6급	'16. 5. 23.			
	백령소청	7급	'16. 5. 23.			
	제603군사	출장소	'21. 10. 18.			

2. 시행일 : 2023. 8. 7.(월)

부 칙

- 1. 이 고시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2021-30호(2021. 10. 18.)는 폐지한다.
-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3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6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